

의안 번호	제3642호
----------	--------

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5년 7월 11일 김포시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25년 7월 21일
- 다. 상 정 일 자 : 2025년 7월 23일
- 라. 의 결 일 자 : 2025년 7월 23일

2. 제안이유

- 2023년까지 상승하던 우리시 고용률이 2024년 급격히 하락하고, 2025년 경제성장률 또한 하향 조정되면서 청년층의 고용 여건 등 전반적인 어려움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됨. 이에 따라 청년 연령을 39세까지 확대하여 취·창업 지원 등 청년 대상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.
- 「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」 개정에 따라, 일부 조항 삭제 및 개정

3. 주요내용

- 가. “34세 이하” 를 “39세 이하” 로 청년 연령 상향 (안 제2조제1호)
- 나. 청년기본소득 지급 “분기부터 매분기” 를 “분기” 로 개정(안 제15조의2제3항)
- 다. “저소득 청년에 한해 일시금으로 지급” 삭제(안 제15조의2제4항)
- 라. “알기 쉬운 자치 법규 정비기준” 에 따라 용어, 띄어쓰기 등 정비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6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9. 주문사항 : 본 조례에서 청년의 연령 기준이 39세로 조정된 만큼, 청년 관련 조례 전반에 대한 연령 기준의 순차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,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함.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: 없음